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88
----------	-------

제출년월일 : 2025.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마포구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포구 ombudsman 근거법령 명시(안 제1조, 제3조, 제5조)

나. 마포구 ombudsman 정의 추가(안 제2조)

다. 마포구 ombudsman 회피규정 의무화(안 제7조)

라. 마포구 ombudsman 당연퇴직 규정추가(안 제9조)

마. 고충민원 신청인 대상자 확대(안 제12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8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7. 10.~7. 30.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포구””를 ““구””로,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을 “ombudsman”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마포구”를 “구”로, “물품구매”를 “물품 구매”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구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그 위원을 말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모집”을 “공개 모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민사회단체”를 “법 제2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궐위된”을 “공석이 생겼을”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마포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를 “구의 사무위탁기관(구”로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6조의 제목 “(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 보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옴부즈만의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

직된다.

제10조의 제목 “(검직금지)”를 “(검직 금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신청인 대표”를 “신청인”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읍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마포구”를 “구”로, “관련자료·서류”를 “관련 자료·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청장 소속하의”를 “구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마포구”를 “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청인 대표”를 각각 “신청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물품구매”를 “물품 구매”로, “매년”을 “매”로, “이내에”를 “내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 <u>마포구</u> ”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u>구민의</u>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 “ <u>구</u> ”----- -----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u> ----- ----- -----.
<신 설>	2.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u>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만</u> (이하 “읍부즈만”이라 한다)에 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u>마포구</u>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u>물품구매</u> 등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읍부즈만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공개모집</u>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u>관련분야</u>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	<u>만”(이하 “읍부즈만”이라 한다)</u> <u>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구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그 위원을 말한다.</u> 3. ----- - <u>읍부즈만</u>-----. 4. ----- - <u>구</u>----- <u>물품 구매</u> ----- -----.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읍부즈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공개 모집</u>----- ----- ----- -----. 1. ----- ----- <u>관련 분야</u>----- -----
---	--

직한 사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u>시민사회단체</u>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 ----- ---- <u>법 제2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읍부즈만이 <u>꺼워된</u> 때에는 새로운 읍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읍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⑤ ----- <u>공석이 된</u> ----- ----- ----- -----.
제5조(직무관할) 읍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5조(직무관할) ----- ----- -----.
1. <u>마포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u>	1. 구 ----- <u>소속 행정기관</u>
2. <u>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u>	2. 「 <u>지방공기업법</u> 」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 <u>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3. <u>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u>	3. <u>구의 사무위탁기관(구-----</u> -----
제6조(<u>읍부즈만 상호간의 관계</u>) (생 략) <u><신 설></u>	제6조(<u>회의</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읍부즈만 회의는 재적 읍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읍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u>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②
(생략)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생략)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생략)

<신설>

제10조(겸직금지) (생략)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이하 “신청인 대표”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② (생략)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

로 의결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현행과 같음)

제9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0조(겸직금지) (현행과 같음)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생략)

② (생략)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생략)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대표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 신청인-----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

-----.

1. ----- 구 -----
----- 관련
자료·서류 -----
2. 구 소속 -----

3. -----
구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청인-----

----- 신청
인-----

있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 · 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u>물품구매</u> 등의 목록 을 <u>매년</u> 회계연도 시작 1개월 <u>이</u> <u>내에</u> 읍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② · ③ (생 략)	--. 제22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 ----- ----- <u>물품 구매</u> ----- - <u>매</u> ----- <u>내</u> <u>에</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고정운
연 락 처	02-3153-8182